투자계약서

제 1조 (계약의 목적)

본 계약은 을 의 『 』에 관하여 투자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갑과 을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투자의 전제조건)

갑은 본 계약에 따른 투자를 위해 우선 을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성립되지 못하고 파기되는 것으로 한다.

1.

2.

제 3조 (투자금의 지급)

갑 은 아래의 내용으로 을 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.

1. 투자금액 : 일금 『 』 만원

2. 지급시기: 년 『 』월 『 』일

제 4조 (신주의 인수)

- ① 을은 갑의 투자에 대한 대가로 설립한 회사의 발행가액 기준 『 』% 의 주식을 갑 에게 배정하기로 한다.
- ② 제 항에 1 따른 신주인수의 배정은 " 갑 "의 총 투자금액이 완불되는 날로부터 『 』일 이내로 한다.
- ③ 을 은 갑이 신주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주식발행의 절차 및 인수절차를 갑의 책임으로 이행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정관 및 내부규칙 등 회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본 계약의 내용 및 사실을 반영하여 변경하고,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등기하여야 한다.
- ④ 을 은 주식의 배정 후 『 』일 이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갑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 갑과 을 이 협의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주식보관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.

제 5조 (투자금의 사용과 회계처리)

을 은 갑 이 투자한 투자금을 오직 회사의 사업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.

제 6조 (회계의 처리)

을 은 관계법령 및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엄격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, 경리 장부를 비롯한 그에 관련된 사항을 비치하고 상법이 규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

제 7조 (이익의 배당)

- ① 을 은 을 의 정관 및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여 갑 에게 주식비율에 대한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배당하여야 한다.
- ② 을 은 갑 에게 공금리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 회사를 경영하여야 한다.

제 8조 (세무)

- ① 을 은 갑 에게 지급할 배당금액에 대하여 을 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즉시 관할 세무당국에 납부한다.
- ② 을 은 위 제 1항의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갑 이 세법에 의해 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음에 있어 충분한 근거가될 수 있는 세무당국 발행의 납세필 영수증 또는 기타 적절한 증빙을 갑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 9조 (주식의 양도)

- ① 갑 은 을 의 승인을 얻어야 보유주식을 양도, 이전, 매각,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.
- ② 만일 갑 이 소유하는 을 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서면으로 을 에게 통고함과 동시에 양도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 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을 은 지체 없이 갑을 제외한 잔여주주의 양수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.만일, 잔여주주가 양수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갑 과 잔여주주 간에 주식매매계약 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, 잔여주주 사이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분하기로 한다. 이 경우 단주가 발생하면 소수 첫째자리 이하에서 반올림한다.
- ④ 제 2항에 다른 통지를 받은 잔여주주 모두가 양수의 의사표시를 보이지 않는 경우 갑 은 제 3자에게 자유롭게 보유주식을 양도, 이전,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다. 다만, 주식을 취득하는 제 3자는 본 투자계약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매도당사자인 갑 과 똑같은 범위로 본 계약 에 따른 구속을 받는다는데 합의하는 약정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을 은 본 조문에 의한 주식의 양도 시 필요한 경우 정부 혹은 관련기관의 인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.

제 10조 (주식양도 제한의 예외)

- ① 갑 은 전조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한규정에 상관없이 주식을 처분할수 있다.
- 1. 을 의 주식이 증권거래소 시장 혹은 코스닥 시장 및 제 3시장에 상장 혹은 등록되었을 때
- 2. 을 의 주주가 갑 소유의 주식을 매입할 의사를 표시하고 을 이 이에 동의한 때
- 3. 투자기간이 5년이 경과한 후 을 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갑 이 투자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때

제 11조 (사업성과 보고의무)

을 은 을 의 정관상의 회계기간이 종료하는 매년 『 』월 말일 현재까지 사업성과를 결산하여 재산목록, 재무제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$\,$ 갑 에게 $\,$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2조 (기업공개 등의 의무)

을 은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을 을 공개하고 그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(KSE) 에 상장하거나 코스닥 시장 또는 제 3시장에 등록하기로 한다.

제 13조 (영업상황 설명 요구권)

- ① 갑 은 을 의 대표이사에게 업무 및 영업상의 손익상황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갑 의 위설명요구권이 을 의 업무를 고려하여 심히 부당하거나 경영간섭에 해당 하는 경우 을 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
- ② 을 은 위 제 1항의 Ω 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두로 설명하거나, 서면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제 14조 (통지의무)

을 은 사업수행에 심각하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5조 (경업금지 등)

- ① 갑 및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갑 의 특수이해관계인은 을 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을 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사업계획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을 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.
- ② 갑 및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갑 의 특수이해관계인은 을 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을 이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.
- ③ 갑 은 자신이 본 건 계약을 통하여 지득한 을 의 영업상의 비밀을 이용하여 그 자신이나 동종의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가 을 과 경쟁이 될 영업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 영업하는데 유무형의 도움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
- ④ 만일 갑 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을 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이 때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, 만일 갑 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서도 배상책임을 진다.

제 16조 (정보의 비밀유지)

- ① 갑 과 을 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및 기타 모든 정보상의 비밀을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본 계약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, 해지 이후에도 존속한다.

제 17조 (권리의 양도)

갑 은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을 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 을 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루어진 권리와 의무의 양도는 무 효이며 일체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제 18조 (계약의 해제 및 해지)

- ① 갑 또는 을 은 상대방이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라 체결한 협의 등을 위반한 경우 그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여부를 통지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이행 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- ② 제 1항에 따른 이행여부의 최고 및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③ 제 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 과 을 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 19조 (해제와 해지의 효과)

-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 은 계약으로 인해 얻게된 지득을 을 의 승인 없이 을 또는 을 의 주주, 다른 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.
- ②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고 그로 인하여 을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 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 20조 (계약의 변경)

- ① 본 계약 내용의 변경, 가감, 삭제, 정정 등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, 법률상의 대표자나 정당하게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.
- ② 변경계약이 정부나 관계기관의 인 허가가 ·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 허가 ·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제 21조 (분쟁의 해결)

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,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로 대한 중재원 상사의 결정을 따르며 이에 굴복 할 시에는 을 의 소재지관할 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.

제 22조 (특약)

- ① 갑 은 을 에게 투자함에 있어 갑 의 투자금 완납 후 을 이 계속적인 경영을 하고 있을 경우 최소 5년간 투자금 반환을 요구 할 수 없다.
- ② 갑 의 요구에 따라 5년후 갑의 투자금을 반환 할 시, 갑 과 을 이 맺은 계약은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됨을 전제로 한다. 따라서 갑 에게 양도 되었던 주식은 을 에게 무상 양도 한다.

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(갑)

주소:

상호명:

대표: (인)

(을)

주소:

상호명 :

대표: (인)